

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898
----------	-----

2015. 12. 17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15. 11. 19. 남창진 의원 발의(2015. 11. 20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,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2조제2항).
- 나.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8조(시장분쟁조정위원회) 및 제59조(조정위원회의 구성 등)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'15.11.20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법령사항에 맞게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함. 다만,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 제정(2005.9.)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으므로, 위원회의 성격을 필요시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이 조례의 근거법이 종전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(생략)</p> <p>②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간의 분쟁으로서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.</p>	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</p> <p>1.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</p> <p>2.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</p> <p>3.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
<p>제3조 (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시장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, 지명직 위원은 시설계획과장·주거재생과장 및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3조 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시장이 지명하는 ----- 하고, 위원은 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<붙임 1>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58조(시장분쟁조정위원회) 시장정비사업,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
2.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
3.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9조(조정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2. 심의위원회의 위원
3.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
4.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
5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6. 그 밖에 토지수용,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